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262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타	㈜○○○○

2. 조치내용

□ **(원안의결)** ㈜○○○○ 증권발행제한 6월
㈜○○○○ 수사기관 통보 (前 대표이사 ◇◇◇)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

○ 회사는 2021.11.29. ☆☆☆☆☆㈜을 인수인으로 하여 제13회차(1,000억원) 및 제14회차(420억원)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을 결정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면서,

- 동 보고서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인 담보 제공약정 사실*을 기재 누락한 사실이 있음

* 제13회차BW-◆◆◆◆㈜ 발행 사모사채 1,000억원에 대한 근질권(담보한도 1,300억원)
제14회차BW-부동산(서울시 ♤♤♤ ♤♤♤ ♤♤♤-♤♤ 필지 등)에 대한 담보신탁 우선수익권(우선수익금액 546억원)

나. 근거법규

□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

○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1조 제1항 제9호, 제164조 제2항 제2호, 제429조 제3항 제1호,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4호, 제175조 제1호,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4조, [별표 제3호] 5.